●표준 임금체계 설계 대전제_테마파크

표준 임금체계 설계에 앞서, 다음과 같이 대전제를 설정하여 진행하도록 함

표준 임금체계 설계 대전제

가족수당의 성과연봉 재원화로 일부 직원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였음 (총 인건비가 감소하진 않음)

시간외 수당의 감축분을 성과연봉 재원화로 시간외 근무를 제한(최대 허용시간을 설정) 하는 것을 전제로 함

테마파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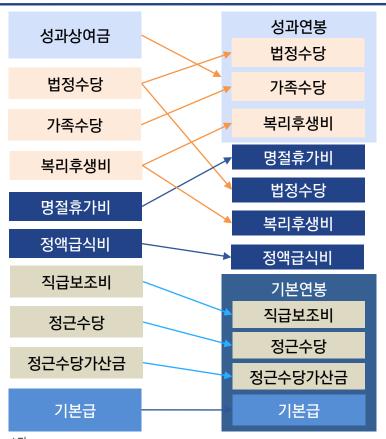
기존의 성과연봉 지급 방식의 변경으로 일부 불이익이 발생하는 직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관별 공정성&합리성의 원칙에 따름 복지포인트의 일괄 정액지급식으로 전제하여 일부 직원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였음

(총 인건비가 감소하진 않음)

○테마파크 연봉제 도입_수당체계 조정

연봉제 전환을 위한 수당의 항목 간소화하여 기관사이의 형평성을 맞추되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을 하였음

임실치즈테마파크 연봉제 전환



- ① 현재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힘듦. 따라서 통상임금성 수당이 아니므로 성과연봉의 재원으로 활용하며 법정수당의 경우 월 시간외근무를 일정시간으로 제한을 둬 남는 재원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함
- ※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(대법원 2013.12.18.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
- ② 기존에 지급중이던 통상임금성 수당은 기본급으로 산입
- ③ 기간관 동등한 복리후생비 규정을 통해 발생하는 차액분을 성과연봉의 재원으로 활용함(가정)
- ④ 명절휴가비는 기본연봉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별도의 수당으로 잔존
- ⑤ 정액급식비의 경우 일정 금액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별도의 수당으로 잔존

○[참고] 경력환산 기준표(안)_테마파크

타 공공기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테마파크의 경력환산 기준표(안)을 제시함

경력기준환산표(안)

| 구분 | 임실치즈테마파크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군복무기간 (전투, 의무경찰, 방위근무기간 포함) | 100% |
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근무경력 | 100% |
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에 근무한 경력 | 100% |
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출연기관 근무경력 | 100% |
| 국.공립교육기관 및 4년제 대학교 교직원 연구기관 근무경력 | 100% |
| 대기업, 금융기관(제1금융권) 근무경력 | 100% |
| 3년제 이하 대학교직원, 사회단체 및 관련 법인체 근무경력 | 80% |
| 기타 중소기업체 및 관련법인 근무경력 | 80% |
| 사립대학, 민간연구소, 사회단체 등 근무경력 | 80% |
| 군 복무기간 외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| 50% |

보수규정 개정(안)

- 경력인정 제1항. 직원의 초임연봉은 1년차로 한다. 다만, 수습기간 종료 후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적증빙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환산경력표를 합산한 연봉으로 하며, 기간미달로 연봉산정에서 제외한 1년차 미만의 잔여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제2항. 제1항의 초임연봉의 환산경력은 15년차를 초과할 수 없다.
- 임실군 특성상 인재 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상향된 경력환산 기준을 제시하였으며, 환산경력의 상한선을 두어 조절할 수 있도록 함
- 경력환산률은 다각도로 논의 및 협의를 통해
 조절할 것을 권고함

○[참고]복지포인트 지급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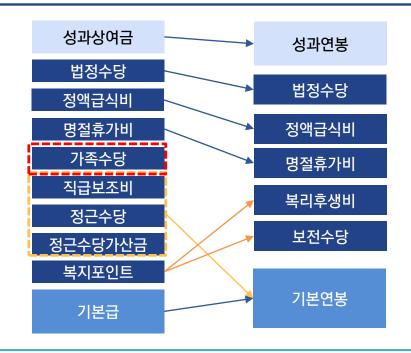
기관간 복지포인트 지급방식이 상이하여, 정액지급식으로 변경될 경우에 발생되는 차액 분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재원화 외에도 2가지 방법이 있음

복지포인트 지급방법1(기본연봉화)



- 복지포인트 정액지급시 발생하는 차액분에 대해서는 기본연봉에 산입하여 보전하는 방식이 있음
- 기존에 수령하는 복지포인트 1,000,000원이 정액지급식
 500,000원일 경우 → 차액 500,000원에 대해서는 기본연봉에 산입

복지포인트 지급방법2(보전수당)



- 복지포인트 정액지급시 발생하는 차액분에 대해서는 보전수당을 활용하여 매년 지급하는 방식이 있음
- 기존에 수령하는 복지포인트 1,000,000원이 정액지급식 500,000원일
 경우 → 차액 500,000원에 대해서는 보전수당으로 매년 보전